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외계열사 주식보유현황 공시 등〉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38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외계열사 주식보유현황 공시 등	3
2.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3.
3. 회 부 일 : 2024.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왔음.

이에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제1항제9호 신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

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외계열사 주식보유현황 공시 등

- 개정안은 동일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안 제28조제1항제9호)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안 제28조제1항제10호)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9. <u>동일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u>
<u><신설></u>	10. <u>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u>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1조제1항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음.

□ 또한, 제28조제1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제1호), 주식소유현황(제2호), 국내 계열회사 현황(제3호), 상호출자 현황(제4호), 순환출자 현황(제5호), 채무보증 현황(제6호),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제7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제8호)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각호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¹⁾

1)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 개정안은 동일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공시 대상에 추가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먼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공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규제만으로 외국법인을 통한 동일인 등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규율하기 어려운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법 제28조제2항²⁾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①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제1호),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및 순환출자 현황(제2호)을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³⁾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2)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그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3)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경우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라목4)은 법 제2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대상인 ‘일반 현황’에 ‘국외 계열회사 현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처럼 현행법이 국외계열회사 현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한 것은 국외계열회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우회출자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공시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동일인의 국외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입법의 실익이 적고, 개정안과 같이 외국법인 소유주식 전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수범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4)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 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국외 계열회사 현황
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 다음, 개정안 제28조제1항제10호의 경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부에서는 개정안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라는 법 문언은 입법목적 외에 공시대상의 범위를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⁵⁾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배 논란을 해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시의 열거를 통해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5)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8조의2(지배구조 내부규범)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 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현행	개정안
	<u>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u> <u>1.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u> <u>2. 회사가 매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u>

□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⁶⁾는 금융회사에 그 금융회사의 이사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6) 제14조(이사의 운영 등) ① 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⁷⁾과 그 시행세칙⁸⁾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상장회사)에게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 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2026년까지 코스피에 상장한 전체 회사로 확대할 예정⁹⁾임.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공시제도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비상장회사에 대하여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공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거론된다는 점¹⁰⁾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처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규모 회사로 하여금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공시하게 하는 개정안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7)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①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① 규정 제24조의2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란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신고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를 포함하여 신고한다.

9)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보도자료(2023.10.13.)

10) 김준석·강소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23-05), p.18

아니라 합당한 기업가치 평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공시내용은 기업의 경영구조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공시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제21대 국회부터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 제정 논의가 있었고,¹¹⁾ 상장회사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의무가 운영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9

11) 제21대 국회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164)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